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5호)

심 사 보 고 서

1998. 8.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8.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8. 8. 1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8. 8. 25 상임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계 직제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2조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8.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